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1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민형배·송재봉·이개호

주철현 · 노종면 · 윤종오

김재원 · 황운하 · 박홍배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득표를 하더라도 연소자는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근거일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참여가 사회적 요구인데,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 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 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 4조제1항 단서 신설).
-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 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제1항제2호 중 "14일"을 "14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8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 3의2.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및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 ③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일까지"를 "전일까지[제188조제1항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결선투표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선투표운동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5일"을 "5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12면"을 "12면(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및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6면)"으로, "8면"을 "8면(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의 경우 4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중 "7일"을 "7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이하 이 호에서 "결선투표"라 한다)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결선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7일 전)"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2回 이내"를 "2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回 이내"를 "5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기간 중 1회)"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2回 이상"을 "2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回 이상"을 "3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 호"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59조제4호"를 "제5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88조제1항 단서 중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를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

항(종전의 제7항) 중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을 "지역구국회의 원당선인의 결정(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 인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서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0조제1항 단서 중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지역구자 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서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고득표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효투 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를 대 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의 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망·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결선투표의 실시 및 당선 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1조제1항 단서 중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를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4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2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선거기간) ①選擧別 選擧	제33조(선거기간) ①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	2
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	
는 <u>14일</u>	<u>14일(제188</u>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
	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
	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
	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8
	<u>일)</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任期滿了에 의	第34條(選擧日) ①
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
	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
	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

② (생략)<신 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투표 및	! 제1912	조제1형	} 단시	네에
<u>따른</u> 지	방자치덕	단체의	장 김	<u></u> 설선
투표는	선거일	후 14	4일째	되
는 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나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2 및 제3호의2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

진다.

②·③ (생 략)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신 설>

제64조(선거벽보)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59조(선거운동기간) ① -----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일까지[제188조제1항 단서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 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제 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 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 다. 이하 같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 기간"이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선 투표운동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 음)

(2)----

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 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 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 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 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 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 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 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 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 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 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u>5일(제188조</u>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
의원 결선투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
원 결선투표, 제191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 역을 지정한다.

③ ~ ②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 ③ ~ ⑤ (생 략)
-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생략)
-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③ ~ ①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
<u>수</u>)
2
<u>12</u> 면(제188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
선투표 및 제191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
<u>선투표의 경우 6면)8면</u>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
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의
경우 4면)
 ③ ~ ⑤ (현행과 같음)
6
1. (현행과 같음)
2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 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 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 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u>투표</u> 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 ⑭ (생 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u>7</u> 일[제18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
표,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
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
투표, 제1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
선투표(이하 이 호에서 "결
선투표"라 한다)는 결선투표
<u>확정일 후 3일]투표</u>
안내문을 발송하는 때(결선
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u>날로부터 7일 전)</u>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있다.

- 1. · 2. (생략)
-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回 이내
- 4. (생략)
- 5. 市・道知事選舉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 ② ~ ③ (생 략) 第73條(經歷放送) ① (생 략)
 - ②第1項의 經歷放送 回數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다.
 - 1. (생략)
 - 図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
 ・郡의 長 選擧
 각 2回 이상

1. · 2. (현행과 같음)
3
2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4. (현행과 같음)
5
5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73條(經歷放送) ① (현행과 같
<u></u>
②
<u></u>
1 /귀레귀 귀소)
1. (현행과 같음)
2
2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

- 3. 市・道知事選擧 각 <u>3回 이상</u>
- ③ ~ ⑤ (생 략)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① (생 략)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 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 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 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 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 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1. ~ 4. (생략)

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 (생 략)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

②<u>제59조제4호</u>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 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u>간 중 1회 이상)</u>
3
3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
<u>간 중 1회 이상)</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제1항제2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59조제1항제4호</u>

없다.

③ (생략)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地域區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 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 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 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u>年長者를 當選</u> 人으로 決定한다.

② ~ ⑥ (생 략) <신 설>

	•		
_		 _	

③ (현행과 같음)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최고득표자를 대상 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국 회의원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는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 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 을 결정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 서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①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 은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地 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 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 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 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 을 決定한다.

<u>8</u>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
정(지역구국회의원 결선투표에
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을 포함한다)
9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
<u>(</u>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서 득표수가 같은 때)
에는 최고득표자(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의 선거의 경우

② (생 략) <신 설>

③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 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마지막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이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두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결선투표에서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망·사퇴하거나 등록이무효로 된 경우 결선투표의 실시 및 당선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u>(4)</u>	 	
	 지역	구지방의

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 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舉 區"로 본다.

④ ~ ⑨ (생 략)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 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u>年長者를</u>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 ② (생략)
-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 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①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

장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
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u>
선인의 결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을 포
합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
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제4항

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 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 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 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 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 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 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 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 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 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 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 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 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 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
치·운영) ①
국회의원선거(지역구
국회의원 결선투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있다.

-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 2. ~ 5.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② (생 략)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병	
에 관한 특례) ①	
1. <u>제59조제1항제2호</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
• ② (현행과 같음)	
3	
1	
1.	

가. (생략)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조 같은호 후단을 위반하여용회를 초과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후보자 또는예비후보자가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자

다. ~ 너. (생 략)

- 2. ~ 4. (생 략)
- ④·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생략)
-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59조제1항제2호</u>
다.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2호

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 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 5. (생략)

④ ~ ⑫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